

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공무원 당연직이사 조정
- 당연직이사 중 위탁업무 비중이 낮은 건설도시국장을 위탁 비중이 높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여 공단업무 지도감독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당연직이사 조정(안 제9조제4항)
 - 행정지원국장 ⇒ 삭제함
 - 건설도시국장 ⇒ 상하수도사업소장

3. 참고사항

-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(행정자치부, 2004. 5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삭제하고, “건설도시국장”을 “상하수도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제9조(이사) ①~③(생략)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이사는 시 <u>기획정보실장, 행정지원국장, 경제통상국장, 건설도시국장을</u>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 ⑤(생략)	제9조(이사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<u>기획정보실장, 경제통상국장, 상하수도사업소장</u>----- ----- ⑤(현행과 같음)	업무 비중에 따라 조정